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수산부령 제822호

농약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1. 3. 26 농 수 산 부 장 관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타 동·식물의 범위) 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라 함은 다음의 동·식물을 말한다

1. 달팽이
2. 잡초

제 3 조(농약의 품목고시방법) 법 제 5 조 제 1 항에 의한 농약의 품목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 행한다.

제 4 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신청) ① 법제 7 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제조장 및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서

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 및 시설내역서와 시설능력조서
2. 시설평면도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등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4. 사업계획서
5. 학력증명서 또는 약사면허증 사본(관리인에 한한다)
6. 신원증명서
7.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업허가증 사본(수입업에 한한다)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조(시설의 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의뢰) 영 제 13 조 제 4 항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수입

업의 허가신청전에 그 시설의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소요자금
3. 기계 및 시설내역서와 시설 능력조사

제 6 조(제조업 및 수입업의 요건과 시설기준)법제 7 조 제 2 항에 의한 제조업 및 수입업의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 7 조(시설의 변경등) ① 법제 7 조 제 3 항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시설변경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이전
2. 제제별 생산능력변경을 조래하는 시설의 변경

② 법 제 7 조 제 3 항에 의하여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제 1 항의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부장관은 제 2 항에 의

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변경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승인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재교부하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에 의한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제 5 항에 의한 검사의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후에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변경시설 내역서 및 변경시설평면도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수산부장관은 제 4 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국립농업자재 검사 소장(이하“자재검사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 8 조(폐업등의 신고)법제 7 조 제 4 항, 법제 8 조 제 2 항·제 3 항, 법제 9 조 제 2 항·제 3 항, 법 제 10 조 제 2 항 또는 법제 11 조 제 2 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농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국립식물 검역소장

(이하 "식물검역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품목의 등록등) ① 법제 8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 품목등록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제확보가능 증빙서류

2. 농촌진흥청장의 제조처방서

② 농수산부장관은 제 1항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은 제조업자가 법제 5조제 3항 제 3호에 의한 부재의 명칭 및 그 함유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제조처방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수입한 때에는 원제의 종류별로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원제등록신청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수산부장관은 제 4항에 의

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제 13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원제업의 등록) ① 법제 9조 제 1항에 의한 원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4호서식에 의한 원제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 및 시설내역서와 시설능력조서

2. 시설평면도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등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4. 학력증명서 또는 약사면허증 사본(관리인에 한한다)

5. 신원증명서

② 제 1항에 의한 원제업의 등록을 한자가 원제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원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장의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시험성적서

2. 합성공정의 개요표

3. 자체농약제조 계획서 및 관

매제회서

③ 농수산부장관은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자체검사소장으로 하여금 별표 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원제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원제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원제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원제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업의 등록) ① 법제10조 제 1항에 의한 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판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내역서
2. 시설평면도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등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4.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② 도지사는 제 1항에 의한 판매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4에 의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방제업의 등록) ① 법제11조 제 1항에 의하여 방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방제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지소장을 거쳐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제기구 및 시설내역서
2. 시설평면도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등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4.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② 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제 1항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5에 의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등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농약의 표시사항) ① 법제 15조에 기타 농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표
2. 내용량 및 기타(부재)함유량
3. 농작물별 적용 병해충(제조계, 생장조정제 및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에 있어서는 적용지목 또는 용도) 및 사용량
4. 사용방법 및 사용시기
5. 안전사용기준
6. 병독성농약, 고독성농약, 작물잔류성농약, 토양잔류성농약 및 수질 오염성농약은 그 문자
7. 인축에 특히 위대한 농약은 그 요지와 해독방법
8. 수산동식물에 위대한 농약은 그 요지
9. 인화폭발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은 그 요지와 특별취급방법
10.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1. 상호 및 소재지. 다만, 수출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제조국과 제조자의 상호
12. 모집단의 일련번호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사항의 내용은 미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농약의 용기 및 포장의 재질 규격 및 표시사항의 표기기준은 자재검사소장이 고시한다.

제14조(광고의 방법등) ① 법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약의 명칭, 제조 방법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 약효의 성능을 광고할 때에는 농약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3. 농약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4. 농약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 또는 연구소 및 도농촌진흥원을 포함한다) 및 영 제11조 제 1항 각호의 기관에서 이를 추천, 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
5. 농약에 관하여 구입, 주문채도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6. 농약에 관하여 저축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7. 다른 농약을 비방하거나 비

난한다고 의심될 광고 또는 외국제품 보다 우수하다는 표현의 광고

8. 농약을 판매할 때에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

② 법제17조 제 2항에 의한 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목명과 상표는 동시에 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명과 상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고를 할 때에는 안전사용 기준을 함께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농약의 품질, 제조방법, 약효나 성능에 관한 광고에 문헌을 이용할 경우에는 농약학 또는 식물방역상 인정된 문헌에 한한다.

제15조(자체검사 책임자) ① 법제19조 제 2항에 의한 출하전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책임자(이하“자체검사 책임자”라한다)는 별표 6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체검사 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자체검사 책임자의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자체검사 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체검사 책임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체검사 책임자로부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자체검사 성적서등) ① 법제19조 제 2항에 의한 자체검사 성적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약명·품목명 및 상표
2. 표시 규격(유효성분의 함유량)

3. 출하전 검사규격
4. 이화학적 검사성적
5. 제조일자

6. 모집단의 일련번호 및 수량
7. 당해품목의 제조량에 대한 원제 및 부재의 명칭과 사용량. 다만, 당해 품목을 제조작업 단위별로 생산완료한 후 일괄 작성 제출할 수 있다.

8. 자체검사 책임자의 성명 및 날인

② 제 1항에 의한 자체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제19조 제 2항에 의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농약을 출하할 때에는 별표 7에 의한 자체 검사필증을 부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신청검사 의뢰) ① 법제19조 제 3항에 의한 신청검사는 자재검사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자재검사 소장은 당해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 1항 규정에 의한 신청검사의 의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불량농약의 처리) 법 제19조 제 5항에 의하여 불량농약을 봉인하여 수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8의 요령에 의한다.

제19조(검사의 기준) 법제19조 제 6항에 의하여 농약의 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제19조에 제 7항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장부의 기재사항) 법제20조 제 2항에 의하여 제조업자, 수입업자, 원재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제조업자

가. 품목별 생산량

나. 판매대상자별 판매량 및 재고량

다. 원재 및 부재의 구입처별 규격별 구입량 및 사용량

2. 수입업자

가. 품목별, 수입처별 수입량

나. 판매대상자별 판매량 및 재고량

3. 원재업자

가. 합성제조용 원료의 종류별, 구입처별 구입량

나. 원재의 종류별 합성제조량

다. 판매대상자별 판매량 및 재고량

4. 판매업자

가. 품목별, 구입처별 구입량
나. 판매량(명독성농약인 경우에는 판매대상자별 판매량)

다. 재고량

제22조(수수료) ① 법제21조 제 1항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수수료는 건당 2,000원으로 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 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등록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제21조 제 2항에 의한 검사료는 당해 신청검사 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 100분의1로 한다.

④ 제 3항에 의한 평가액은 전년도 결산상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평균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 3항 및 제 4항에 의한 검사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재검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농약관리기금의 관리자등)

① 법제22조 제 2항에 의한 농약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사단법인 농약공업협회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기금적립금액의 납부통지)

영제18조 제 1항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자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적립금액의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1

년 4월 10일까지 제조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 2 조(허가증의 교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자와 원제업 및 판매업의 등록을 한자는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규칙에 의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와 방제업의 신고를 한자는 법부칙 제 3항에 의하여 시설을 갖춘 후 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제조처방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원제 수출국의 회사가 발행한 제조처방서 또는 자재검사소장이 확인한 잠정제조처방서는 제 9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제조처방서로 본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재검사소장이 확인한 잠정제조처방서에 대하여 1983년 12월 31일까지 그 약효, 약해 및 독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격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부칙 제 2항에 의하여 시

협을 실시중이거나 시험을 실시한 품목을 제 9조제 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제수출국의 회사가 발행한 제조처방

서를 제 9조제 1항제 2호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의 제조처방서로 본다.

[별표 1]

농약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요건

1. 농약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수입을 책임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가.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에서 농화학, 화학, 화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나,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농약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허가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라. 농자, 아자 또는 맹자

3. 농약수입업자는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별표 2]

농약제조 및 수입약의 시설기준

1. 제조업의 시설기준

1. 기본시설

가. 실험실 시설

(1) 실험실 면적

가. 화학검사 실험실 33m²이상

나. 생물검사 실험실 33m²이상

다. 온실 100m²이상

라. 무균실 3.3m²이상

(2) 실험용 포장 1헥타이상

(3) 화학실험기구

가. 화학천칭 (Chemical Balance) : 1대 (Cap200g—Sen—0.1mg)

나. 건조기 (Dry Oven) : 1대 (20—200°C±3°C)

다. 전기로 (Furnace) : (1,000°C)

라. 저온항기 (Refrigerator) : 1대 (-10°C)

마. 수욕조 (Water Bath) : 1대

바. 비색계 : 1대

사. 가스크로마토그래프 (Gas Chromatograph) : 1대

아. 진공펌프 (Vacuum Pump)

1대 (10⁻⁵mg, Hg)

자. 순수채취기 : 1대

차. 표준사육 : 1조

카. 액체비중계 : 1조

타. 표면장력측정기 : 1대

(4) 생물실험기구

가. 턴테이블 : 1대

나. 침전탑 : 1대

다. 항온기 : (내실 75cm×40cm×45cm) 2대

라. 원심분리기 : 1대 (3,000회 R.P.M)

마. 현미경 : (1,500배 이상) 1대

바. 고압살균기 : (15LbS) 1대

사. 건열살균기 : (180°C) 1대

아. 저온항온기 : (-15°C 자동조절기 부착) 1대

자. 실체현미경 : (40배 이상) 1대

차. 화학천칭 (Chemical Balance) 1대 (Cap 200g—Sen 0.1mg)

카. 저울 (Cap 1.5kg, Sen 0.1g) 1대

타. 살분기 (Cap 300g) 1대

파. 브렌타 또는 호모게나이 자 (3,000 R.P.M) 1대

하. 곤충사육장 : 10개

(5) 기 타

위의 시설 및 기구외에 당해 회사의 제품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학실험실은 화학분야(약사를 포함한다) 생물실험실은 생물학분야를 전 공한자를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시설

(1) 면 적

660m²이상(구성면적 최소단 위 165m²이상)

(2) 바 닥

방수시멘트 콘크리트시공 이 상

(3) 환기구

벤지페타등 환기시설의 완비

2. 제제형태별 기본제조시설

가. 유제, 액제

(1) 원제용해조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가열용해장치 부착

다. 이송장치부착

(2) 원제혼합조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동력교반장치

다. 이송장치부착

라. 분제, 수화(용)제의 원 제 혼합조와 겸용가능

(3) 원부재 계량장치

단순조작이 가능한 시설

(4) 원제처리시설

제품별 특성에 따라 설치

(5) 혼합조

가. 가열용해장치부착

나. 동력교반장치부착

다. 이송장치부착

(6) 여과장치

송액 또는 흡인장치부착

(7) 저장조

용량 5,000ℓ 이상(최소단위 2,500ℓ 이상)

(8) 포장시설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 포장 장치

(9) 제조능력

1일(8시간 기준) 단위포장으로 20,000병 이상 제조하고 제품량으로 2,000ℓ 이상 제조 할 수 있을 것.

나. 분제, 수화제, 수용제

(1) 원제용해조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가열용해장치부착

다. 이송장치부착

라. 유제, 액제의 원제 용해 조와 겸용가능

(2) 원제혼합조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동력교반장치

다. 이송장치부착

(3) 원부재 계량장치

- 단순 조작이 가능한 시설
- (4) 원제처리시설
제품별 특성에 따라 설치
- (5) 예비혼합조
가. 원제분무 또는 원제투입 장치
나. 동력교반장치 부착
다. 이송장치부착
- (6) 중간분쇄기
- (7) 제품혼합조
가. 동력교반장치 부착
나. 이송장치부착
- (8) 선별기
- (9) 제품저장조
용량 10,000ℓ 이상(최소단위 용량 5,000ℓ 이상)
- (10) 포장시설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 장치
- (11) 제조능력
1일(8시간 기준) 단위포장으로 5,000포 이상 제조하고 제품으로 5,000kg 이상 제조할 수 있을것
- 다. 조립식 입체
- (1) 원제용해조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가열용해장치부착
다. 이송장치부착
라. 유제·액제의 원제 용해 조와 겸용가능
- (2) 원제혼합조

-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동력교반장치
다. 이송장치
라. 분제, 수화제의 원제 혼합 조와 겸용가능
- (3) 원부제계량장치
단순조작이 가능한 시설
- (4) 원제처리시설
제품별 특성에 따라 설치
- (5) 혼합조
가. 원제분무 또는 원제투입 장치 부착
나. 동력교반장치
다 이송장치부착
- (6) 반죽시설
가. 동력반죽장치부착
나. 이송장치부착
- (7) 조립시설
- (8) 건조시설
가 가열송풍장치부착
나 건조기
- (9) 선별기
- (10) 저장조
용량 10,000ℓ 이상(최소단위 용량 5,000ℓ 이상)
- (11) 포장시설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 장치
- (12) 제조능력
1일(8시간 기준) 단위포장으로 5,000포 이상 제조하고 제품으로 5,000kg 이상 제조할

- 수 있을 것
- 라. 흙착식 및 도말식 입제
- (1) 원제용해조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가열용해장치부착
 다. 이송장치부착
 라. 유제·액제의 원제 용해조와 겸용가능
- (2) 원제혼합조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동력교반장치부착
 다. 이송장치부착
 라. 분쇄·수화(용)제의 원제혼합조와 겸용가능
- (3) 원부제제량장치
 단순조작이 가능한 시설
- (4) 원제처리시설
 제품별특성에 따라 설치
- (5) 제품혼합조
 가. 원제분무 또는 원제투입장치부착
 나. 동력교반장치부착
 다. 이송장치부착
- (6) 건조시설
 제품별 특성에 따라 설치
- (7) 선별기
- (8) 저장조
 용량 10,000ℓ 이상(최소단위 용량 5,000ℓ 이상)
- (9) 포장시설
 자동또는 반자동정량포장장치
- (10) 제조능력

- 1일(8시간 기준) 단위포장으로 5,000포 이상 제조하고 제품으로 5,000kg 이상 제조할 수 있을 것
- 마. 액상수화제
- (1) 원제용해조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가열용해장치 부착
 다. 이송장치 부착
 라. 유제·액제의 원제용해조와 겸용가능
- (2) 원제혼합조
 가. 용량 1,000ℓ 이상
 나 동력교반장치 부착
 다 이송장치 부착
 라. 분쇄·수화(용)제의 원제혼합조와 겸용가능
- (3) 원부제제량장치
 단순조작이 가능한 시설
- (4) 원제처리시설
 제품별 특성에 따라 설치
- (5) 혼합조
 가. 원제분무 또는 원제투입장치
 나. 동력교반장치부착
 다. 이송장치부착
- (6) 분쇄기
 액상용 분쇄시설
- (7) 저장조
 용량 2,000ℓ 이상(최소단위 용량 1,000ℓ 이상)
- (8) 포장시설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 장치

(9) 제조능력

1일(8시간 기준) 단위포장으로 20,000병 이상 제조할 수 있으며 제품으로 2,000% 이상을 제조할 수 있을 것

바. 비선택성 제조제

상기 제제형태별 기본제조시설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사. 기타

제제형태별 제조시설중 공유 가능한 시설은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상기제조시설로서 제조가 불가능한 약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약제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계획서를 농수산부장관에 제출하고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II. 수입업의 시설기준

1. 기본시설

가. 실험실시설

농약제조업과 동일

나. 보관창고시설

농약제조업과 동일

2. 제제형태별 기본제조시설

해당 농약의 제제형태별 제조시설중 저장조시설과 포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농약원제업의 요건 및 시설기준

I. 원제업을 하고자 원하는 자는 제조업자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II. 원제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시설 : 제조업의 시설기

준중 화학검사실험실 및 화학실험기구와 당해 원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보관창고시설

○ 면적 : 165m² 이상

○ 바닥 : 콘크리트시공

[별표 4]

농업 판매업의 요건 및 시설기준

1.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3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그 자격이 있는자로 하여금 농약판매업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가.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나.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졸업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지도 및 국공립 농약점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 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판매업의 시설기준

	맹독성 이외의 농약	맹독성 농약
점 포	9.9m ² 이상	3.3m ² 이상 추가확보
창 고	9.9m ² 이상	별도 보관창고(3.3m ² 이상) 또는 시진장치
구 조	1. 차광시설 2. 사람의 거주장소와 구획되어 있을 것 3. 의약품, 식료품 및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되어 있을 것 4. 창고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고 깔판시설이 있을 것	좌 동

[별표 5]

방제업의 요건 및 시설기준

방제업종	요	건	시	설
일반방제업	판매업의 요건과 같다.		동력방제기구를 소지하고 1일(8시간기준) 10ha 이상 방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항공방제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2.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1인이상 방제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제용 항공기를 1대이상보유하고 1일(8시간기준)200ha 이상 방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항공방제효과 비교 시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수출입직물방제업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에서 농학, 농생물학 또는 농화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1인이상을 방제기술자로 확보하고 있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약총병, 가스농도측정기 3대이상 2. 사용약총병 미량가스검지기 3대이상 3.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 10개이상 4. 산소농도측정기 1대이상 5. 공기호흡기 1대이상 6. 송풍기(50m³/min이상) 5대이상 7. 가온기 또는 기화기 3대이상 8. 판저울(끝달림 100kg이상) 3대이상 9. 창고 50m³ 이상 10. 최고 최저온도계 및 곡은계 각 3대이상 11. 밀폐용 천막 15,000m²이상 	

[별표 6]

자체검사 책임자의 요건

자체검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되어야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에서 농화학, 화학 또는 화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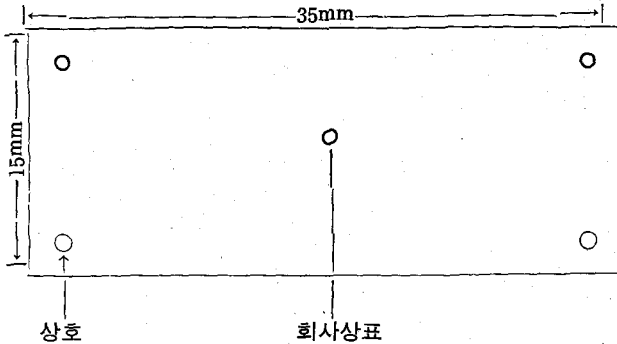
지자

3.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 기관에서 농약분석 업무에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7]

자체검사필증

자체검사필증의 규격



- 상 호 : 네모퉁이에 약자로 표시
- 회사상표 : 중앙에 표시
- 기 타 : 색채 및 압호는 자체선정

불량농약의 처리요령

1. 봉인 및 수거

가.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이 불량농약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적발한 불량농약 전량을 타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봉인 조치하거나 봉인보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폐기처분을 지시할 수 있다

나. 검사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봉인 또는 폐기처분 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농약중 보관관리 부실등으로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이상으로 인하여 불량농약이 된 것으로 동일모집단 전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 통보를 받은 각도지사는 1월 내에 관내에 유통되는 불량농약의 동일모집단 전부를 단속하여 봉인조치하고 그 결과를 당해 불량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고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즉시 봉인된 불량농약 전량을 수거하고 수거상황을 농수산부장관과 해당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폐기처분

가. 폐기처분은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농약검사공무원 및 경찰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나. 폐기처분 장소는 인축의 출입이 적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곳 또는 안전폐기 장소에서 가연성농약은 소량씩 연소시키고 연소가 불가능한 농약은 1m 이상의 지하에 흙과 혼합하여 매몰하고 포장은 소각한다.

다. 폐기처분에 입회한 검사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폐기처분 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재 제조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기타 재제조 사용이 가능한 농약에 대하여는 해당 농약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거하여 재제조할 수 있다.

농약의 검사기준

1. 자체검사 및 신청검사

가. 모집단 형성

제조농약(수입농약의 개포장·분포장된 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로트(제품의 균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단위)별로 모집단을 형성하고 모집단번호를 구분 표기한다. 다만, 제조농약의 모집단은 당해회사의 1일제조능력(8시간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제제형태별 최대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제제 형태 별	최대모집단수량
유제, 액제, 수화제, 수용제, 액상수화제	10톤
분제, 입제	50톤

나. 시료발취 및 외관검사

(1) 모집단별로 완전 임의추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료를 발취한다.

다만, 신청검사를 할 때에는 그 모집단을 시료발취한 후 봉인한다

(2) 발취한 시료 전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외관 검사한다

(가) 포장 및 표기상태 : 농촌진

모집단의 소포장 수 배	발취개체수량
5,000개 이하	50개
5,001개 이상	100개

홍청장이 승인한 포장지 표기 내용 및 자체검사소장이 고시한 포장 및 표기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자체검사필증 부착(표시) 상태 : 견고하고 정확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다) 용량 및 중량의 정상여부 : 상온에서 표시 내용량 이상이여야 한다.

(3) 외관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발취시료중 1개 이상의 분석시료를 추출하여 2개의 시료 봉투에 각각 나누어 넣고 관계인 입회하에 봉인한다.

다만, 자체검사를 할 때에는 제조과정중에서 모집단별로 1개 이상의 분석시료를 발취할 수 있다.

다. 이화학적 검사

(1) 자체검사소장이 고시한 품목별 이화학적 분석방법에 의하여 검사하고 자체검사소장이 고시한 출하전 검사규격과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자체검사는 제조일 또는 재포장일로부터 7일내에 이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자재검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검사 소장은 신청검정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이를 재제조하도록 한다.

(3) 신청검사하여 합격된 농약은 관계기관의 검사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직권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2. 직권검사

가. 직권검사계획 수립

자재검사소장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약의 직권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료발취 및 외관검사

(1) 농약검사 공무원은 제조소 또는 판매업소에서 농약시료를 발취하기 전에 법제 5조제 1항, 제 8조제 1항,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농약인지의 여부 및 제 1호나목(2)의 기준에 적합한 농약인지를 검사한다.

(2) 시료의 발취는 관계인 입회하에 완전 임의추출법에 의하여 완포장상태에서 개체별로 발취하

며 1개의 공시품을 봉투에 넣고 농약검사공무원과 관계인 연명으로 봉인한다.

다. 이화학적 검사

자재검사소장은 시료를 발취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재검사소장이 고시한 품목별 이화학적 분석방법에 의하여 이화학적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표시규격과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합격판정한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취한 시료는 자재검사소장이 고시한 출하전 검사규격에 의하여 판정하되 최우선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라. 생물학적 검사

자재검사소장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역가검사를 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시험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재 검사

이화학적 검사와 역가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별지 서식은 지면관계상 생략 ※